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특례 안내

2022년 02월 0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RCEP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가 체결한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동 협정의 발효 즉시 수출업체가 동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방법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 신청기간

- 21.12.08 ~ 22.01.28 까지 신청가능하며, 인증 신청서 접수 시 20일 이내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II. 신청세관

- 인증 희망 수출업체의 관할세관 인증부서에 신청하시면 되며, 인증수출자 특례지원 세관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연락처	E-Mail
인천본부세관	032-452-3169	incheonsuppro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87	fta010@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63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92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5	ftafta071@korea.kr
평택직할세관	031-8054-7175	fta016@korea.kr

III. 신청방법

1. 간이인증

- 신청대상 : 현재 한-중국, 한-아세안, 한-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 희망업체

- 대상품목 : [붙임 1] “RCEP 간이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 제출서류 : [붙임 2]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와 “원산지소명서, 협약서, 원산지관리전담자증빙자료”를 제출
- 유효기간
 - RCEP 발효 전 인증 완료된 경우 발효일부터 5년
 - RCEP 발효 후 인증 완료된 경우 인증일부터 5년

2. 일반인증

- RCEP 간이 인증 품목에 해당하지 않은 품목의 인증은 일반적인 인증절차를 따름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RCEP 간이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붙임 2]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

| Contact



차재영 관세사

T 02-6929-3464
E jycha@esein.co.kr



노규현 팀장

T 051-462-8278
E ghnoh@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관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